

	등록번호	20110500014	홈페이지 및 이메일
	최초등록일	2011-06-02	www.opticalmanager.co.kr
	최종등록일	2024-08-22	om7741@hanmail.net



안경 매니저

정 보 공 개 서

(주)안경매니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 안 경 매 니 저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619 벽산프라자 8층 802-2 호

TEL: 042-523-7741 / FAX: 042-523-7743

[담당부서: 체인사업부 042-523-7741]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2.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여부
4.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 및 가맹사업의 내용
5. 가맹본부의 재무현황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7.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2. 가맹사업 연혁
3. 가맹사업 업종
4. 바로 전 3 개년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5. 바로 전 3 개년도 말 가맹점수 변동 현황
6.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기타 가맹사업 현황
7.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 및 그 산정기준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현황
10. 광고·판촉지출 내역
11. 가맹금 예치기관
12.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내역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3. 형(刑)의 선고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2. 영업 중의 부담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 구입 및 임차
2. 거래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내역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4. 영업지역
5.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연장, 종료 및 수정, 해지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부담 기준
10.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사항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오픈 절차
2. 분쟁 해결 절차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3. 경영활동 자문
4. 신용 제공 등 내역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내역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IV.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 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 가지 필수사항**을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당사의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주)안경매니저	“안경매니저”외 4 개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619 벽산프라자 8 층 802-2 호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전화번호 및 팩스
	2005.11.14	2005.11.14	김재목	TEL. 042-523-7741 FAX. 042-523-7743
	법인 등록번호	160111-0198980	사업자 등록번호	305-81-78528

- 당사는 현재 [안경매니저]와 [아이피아], [씨채널], [글라스스토리 (GLASS STORY)] [렌즈스토리 (LENS STORY)] 가맹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사용인 (대표)	김재목	“안경매니저”외 4 개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619 벽산프라자 8 층 802-2 호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2005.11.14. ~ 현재	김재목
사용인 (임원)	이지선	“안경매니저”외 4 개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619 벽산프라자 8 층 802-2 호	
			사업(경영)기간	대표전화번호 및 팩스
			2018.01.08. ~ 현재	김재목



관계	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사용인 (임원)	김희량	“안경매니저”외 4 개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619 벽산프라자 8 층 802-2 호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및 팩스
	2020.06.23. ~ 현재		김재목	042-523-7741 / FAX 523-7743
관계	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사용인 (임원)	윤영식	“안경매니저”외 4 개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619 벽산프라자 8 층 802-2 호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및 팩스
	2020.10.16. ~ 현재		김재목	042-523-7741 / FAX 523-7743

3. 인수·합병 여부

당사는 2023 년 9 월 30 일 주식회사 씨채널로부터 “씨채널” 가맹사업 관련 영업 일체를 양수하여 지속하고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양도 기업명	영업표지	영업양도일	양도기업의 주소	양도기업의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영업을 양수함	주식회사 씨채널	“씨채널”	2023. 9. 3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 가길 36, 3 층 (남대문로 5 가)	윤병노

4.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안경매니저	없 음
상 호	안경매니저 OO 점	없 음

상표(서비스표)	 안경 매니저	등록번호 4500157140000 (2006.04.06)
그 밖의 영업표지	 안경 매니저	

5. 가맹본부의 재무현황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현황요약

당사의 정보공개 직전 최근 3년 동안의 재무현황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	8,273,735	5,039,348	3,234,387	17,518,748	168,710	185,735
2022	8,444,917	5,003,415	3,441,501	18,113,379	178,988	207,114
2023	9,066,550	5,536,618	3,529,932	18,621,558	195,568	88,430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직영점포함) 관련 매출액은 1)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다만, 당사는 안경을 전문으로 하는 『안경매니저』와 『아이피아』 『씨채널』 『글라스스토리 (GLASS STORY)』 『렌즈스토리 (LENS STORY)』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상기 1)의 매출액 중 『안경매니저』 만을 위한 가맹사업 매출액은 상기 금액보다 매우 적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사업체명	담당 업무
가맹 사업 관련 임원	김재목	대표이사	2005.11.14 ~ 현재	(주)안경매니저	회사운영 총괄대표
	이지선	이사	2018.01.08 ~ 현재	(주)안경매니저	가맹점관리
	김희량	이사	2020.06.23 ~ 현재	(주)안경매니저	홍보마케팅
비관련 임원	윤영식	감사	2020.10.16 ~ 현재	(주)안경매니저	회계 감사

7.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당사의 정보공개 직전 사업년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3	1	25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최근 3년 동안 안경매니저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경영하였습니다.

관계	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등록기간	사업내용
가맹 본부	(주)안경 매니저	안경매니저	20110500014	2005.11.14 ~ 현재	안경전문 가맹사업
		아이피아	20110500015	2007.04.01 ~ 현재	백화점등 대형매장형 안경전문점
		씨채널	20120500062	2012.10.12 ~ 현재	안경전문 가맹사업
		글라스스토리	20201242	2020.09.22 ~ 현재	안경전문 가맹사업



		렌즈스토리 (RENS STORY)	20201239	2020.09.22 ~현재	렌즈전문 가맹사업
--	--	-----------------------	----------	-------------------	-----------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귀하가 당사의 안경매니저 가맹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귀하에게 부여하는 지식재산권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존속 기간 만료일
 안경 매니저	간판, 인테리어 시설물 및 판촉, 홍보활동	등록 2006.04.06	출원번호 4520040003857 등록번호 4500157140000	김재목	2026. 04.06. (존속기 간까지)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에 관하여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ri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당사의 안경매니저에 대한 가맹사업 시작일은 2005 년 11 월 14 일입니다.

2. 가맹사업 연혁

당사의 안경매니저에 대한 가맹사업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명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주)안경매니저	안경매니저	김재목	2005.11.14 ~ 현재	대전시 중구 계백로 1619 벽산프라자 8 층 802-2 호

3. 가맹사업 업종

안경매니저에 대한 가맹사업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안경매니저	안경	안경, 렌즈

4. 바로 전 3 개년도 말 안경매니저의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당사의 정보공개 직전 최근 3 개년도 말 안경매니저의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 12. 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87	187	-	181	181	-	167	167	-
서울	17	17	-	17	17	-	14	14	-
부산	2	2	-	3	3	-	3	3	-
대구	7	7	-	6	6	-	6	6	-
인천	3	3	-	2	2	-	2	2	-
광주	13	13	-	12	12	-	10	10	-
대전	19	19	-	18	18	-	17	17	-
울산	1	1	-	1	1	-	2	2	-
세종	2	2	-	1	1	-	1	1	-
경기	28	28	-	27	27	-	26	26	-
강원	2	2	-	2	2	-	2	2	-
충북	20	21	-	18	18	-	17	17	-
충남	25	25	-	25	25	-	22	22	-
전북	28	27	-	27	27	-	25	25	-
전남	5	5	-	5	5	-	5	5	-
경북	8	8	-	9	9	-	8	8	-
경남	5	5	-	5	5	-	4	4	-
제주	2	2	-	3	3	-	3	3	-

5. 바로 전 3개년도 말 안경매니저의 가맹점수 변동 현황

당사의 정보공개 직전 최근 3개년도 말 가맹점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189	9	2	9	2	187
2022	187	6	5	7	5	181



2023	181	1	1	14	0	167/0
------	-----	---	---	----	---	-------

6. 안경매니저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현재 [안경매니저]와 [아이피아], [씨채널], [글라스스토리 (GLASS STORY)] [렌즈스토리 (LENS STORY)]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상호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단위: 개)		
				2021.12.31.	2022.12.31.	2023.12.31.
(주)안경 매니저	안경매니저	20110500014	서비스 (안경)	187/0	181/0	167/0
	아이피아	20110500015	서비스 (안경)	101/0	98/0	87/0
	씨채널	20120500062	서비스 (안경)	61/0	58/0	75/0
	글라스스토리 (GLASS STORY)	20201242	서비스 (안경)	47/0	58/0	58/0
	렌즈스토리 (RENS STORY)	20201239	서비스 (안경)	1/0	1/0	1/0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지역별 연간평균매출액 및 그 산정기준

『안경매니저』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올린 연간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되며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	가맹점 수	2023년 연평균 매출액(단위: 천원, VAT미포함)						비고
		연평균 매출액		상한 매출액		하한 매출액		
		연평균	3.3㎡당	상한	3.3㎡당	하한	3.3㎡당	
전체	167	300,211	12,610	1,333,179	82,912	25,691	856	산출:167개
서울	14	327,902	18,167	879,700	82,912	25,691	856	산출:14개
부산	3							5곳미만
대구	6	197,564	7,969	364,510	18,484	56,324	2,107	산출:6개
인천	2							5곳미만
광주	10	272,438	9,554	894,073	22,352	71,568	3,408	산출:10개
대전	17	521,970	24,003	1,333,179	74,066	147,799	7,390	산출:17개
울산	2							5곳미만
세종	1							5곳미만
경기	26	274,378	10,106	875,364	21,884	65,313	3,629	산출:26개
강원	2							5곳미만
충북	17	272,906	10,426	916,271	43,632	65,480	3,357	산출:17개
충남	22	297,302	11,811	705,133	26,593	121,063	4,591	산출:22개
전북	25	253,105	9,913	537,222	26,861	72,323	3,394	산출:25개
전남	5	304,700	9,663	880,411	22,010	57,282	2,864	산출:5개
경북	8	286,762	10,762	484,410	24,081	187,570	970	산출:8개
경남	4							5곳미만
제주	3	-	-	-	-	-	-	5곳미만

- 당사가 추정한 가맹점사업자 원가 분석 자료에 따르면 물품 공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15%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역산하여 가맹점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매출액 = 당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공급액 × 추정비율(1/0.15)]
- 가맹점 운영개월수가 6개월 미만인 경우와 매출액이 부정확한 경우, 해당 자료를 1년 치로 환산하여 전체연간평균매출액을 추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추정근거 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9 조 제 3 항・제 4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 조 제 1 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며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안경매니저』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167 개	107 개월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현황

당사는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의 연간 광고 및 판촉에 관한 세부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비공개)	-	100,851	-	-	-
광고	-	-	-	-	-	-
판촉	-	-	-	-	-	-



- 위 금액은 당사의 작년 말 기준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광고선전비 및 판매촉진비의 내역이며, 이 금액은 당사의 가맹사업 『안경매니저』 『아이피아』 『씨채널』 『글라스스토리』 『렌즈스토리』 브랜드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소요된 총 비용으로 각 브랜드별 금액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안경매니저』만을 위해 소요된 광고 및 판촉 비용은 상기 금액보다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11. 가맹금 예치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체국 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우체국	서대전우체국	대전 중구 문화동 1-217	1588-1980 042-250-3434
국민은행	개인금융팀	대전 중구 유천 2 동 185-1	1588-9999 042-585-9911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우체국 또는 국민은행에 가맹계약 체결 후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우체국의 경우,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시어 예치가맹금을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우체국장명의로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예치방법은 우체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문의 전화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은행의 경우, 가까운 국민은행을 방문하시어 예치가맹금을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입금하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http://bank.kbstar.com>)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로그인 후 기업서비스의 가맹금 예치제도를 클릭하여 “안경매니저”를 확인 후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자세한 예치방법은 국민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문의 전화 (1599-9999)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우체국 또는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 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 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예방 및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가맹금예치제도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두가지를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계약 체결시 귀하와 협의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할 수도 있고, (주)서울보증보험의 “프랜차이즈보증보험”으로 대체함으로서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가맹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고 직접 당사가 정하는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과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주) T.1670-7000
피보험인(보험계약자)	(주)안경매니저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발급일로부터 2 개월 또는 가맹점영업개시일중 빠른 시점
보험금액	예치금액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개점홍보비)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의무 불이행시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예치기관으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귀하에게 증권을 제출하고 당사가 정하는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경 매니저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안경매니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비용을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협력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은 신규가입자인 경우와 기존가맹점 양수자의 경우에 따라 달라지며 각각의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규 가입자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11,000	계약체결 후 즉시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개설을 위하여 소요되 는 소멸성 비용	반환시 당사에 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교육비	₩2,200	계약체결 후 즉시	교육 시작 1 일 이전 에 계약 해 지	교육이 시작되 면 반환되지 않 음	교육을 위해 소 요되는 소멸성 비용



- 개점행사비와 관련하여 당사는 오픈행사 없이 영업을 시작하며 오픈행사를 희망하시는 가맹점주님께서서는 각자의 부담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나. 기존가맹점 양수자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양수 가맹비	₩5,500	계약체결 후 즉시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요되 는 소멸성 비용	반환시 당사에 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교육비	₩2,200	계약체결 후 즉시	교육 시작 1 일 이전 에 계약 해 지	교육이 시작되 면 반환되지 않 음	교육을 위해 소 요되는 소멸성 비용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 보증금	5,000	계약체결 후 즉시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및 물품대금 미지급 등	계약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잔존채무와 손해배상액을 정산 후 반환

- 이행보증금은 직전년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 회 평균 상품 등의 대금(원·부재료 대금 포함)의 3 배 이내에서 산정합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예치가맹금액
합계	₩18,200
가맹비	₩11,000
교육비	₩2,200
개점행사비	없 음
보증금	₩5,000(부가세 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 및 금전 지급방법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인의 경우에는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간판, 인테리어 등 기타 비용 (기준: 99 ㎡ (30 평) / 단위: 천원, VAT 포함)					
구분	지급대상	총 금 액	3.3 ㎡당 금 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총 계]		[118,250 ~ 154,000]	[3,942 ~ 5,133]		
익스테리어 (간판 등)	업체자율 (요청시 협력업체)	11,000 ~ 16,500	367 ~ 550	시공업체와 협의결정	시공업체 와 협의결정
인테리어	업체자율 (요청시 협력업체)	59,400	1,980		
안경필수설비	가맹본부	44,000 ~ 55,000	1,467 ~ 1,833	설비품목 발주전	설비품목 발주전
초도 물품	별첨 2. 참조	3,300 ~ 22,000	-	물품공급 1 일 이전	물품공급 3 일 이전 계약취소



기타 물품	가맹본부	550 ~ 1,100	-	가맹개설 전일까지	가맹개설 1 주일전 계약취소
-------	------	----------------	---	--------------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으며 매장규모 및 물가인상, 디자인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에는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3.3㎡ 당 가격은 대략 180만원(부가세 별도)으로 책정되었으며 매장규모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집니다.
- 각종 인허가 및 기존 시설물 철거, 냉난방공사, 전기증설공사, 가스공사, 소방공사, 화장실공사 등은 별도로 실비를 추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귀하께서 인테리어등 권장 부분에 대하여 직접시공 및 설비구입을 하는 경우 당사는 디자인 시안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검수 및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귀하는 검수 및 지도감독비로 총 가맹점 면적에 대하여 3.3㎡당 33만원 (VAT 포함)을 당사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초도물품과 관련하여 초도 발주물량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입지 선정의 기준
가맹점사업자	1)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	-------	----------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안경사 자격 취득자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 18 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안경매니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하며, 반드시 당사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는 물품내역에 대하여는 [별첨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물품내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오픈 이후 지급해야 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 대상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월정 정기 지급금	가맹본부	[330] 매년 10% 범위 내 인상가능	매월 10 일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영업표지 사용대가, 경영지원등
영업표지 간판변경비	업체자율 (요청시 협력업체)	교체보수 필요시험의	시공업체와 협의	시공업체와 협의	시공업체와 협의	부득이한 경우 변경



시설,기기 교체보수비	가맹본부	교체보수 필요시 협의	공사 발주전	공사발주전 계약해지시	발주후 반환불가	가맹사업법 상의 정당한 사유에 한함 내구연수감 안(8년기준)
점포환경 개선	업체자율 (요청시 협력업체)	가맹본부분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VII.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중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개점이후 교육비	가맹본부	기본교육 무료, 특수사항 실비	교육실시 7일전	교육실시 3일전 취소	교육후 반 환되지않 음	수시교육
		개별교육에 따라 가맹점주 와 협의 산정	교육실시 7일전	교육 실시 3일전 취소	교육후 반 환되지 않 음	특별교육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기일 다음날부 터 지급 날까 지	-	-	금전지급 기한 경과시 부담.
광고·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9-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실시후 반환불가	-

- 리스로, 재고관리비용, 회계처리비용, 영업지역 보증금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광고분담비에 관하여는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중 8.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절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기준의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이 경우 차액가맹금에는 물류비용과 인건비, 개발비, 홍보비, 판촉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감독 항목	내 용	시 기	비 고
재고관리, 서비스상태 등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운영 상태 및 취급품목, 실재재고수량조사, 공급품의 보관상태 등	부정기	문의 042-523- 7741
회계처리	영업장부 및 회계자료의 작성유지 여부, 연매출액에 대한 자료요청 및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조사 실시	1 년 1 회이상 및 요청시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정기적으로 당사의 직원을 통하여 당사가 정한 규정 이외의 품목 취급 여부, 공급품의 보관상태 등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 관리, 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장의 점검 및 확인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 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가맹사업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과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당사가 정보공개서 작성을 위해 귀하의 연 매출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 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으면 기존 가맹계약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②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당사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 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③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이행기간, 계약해지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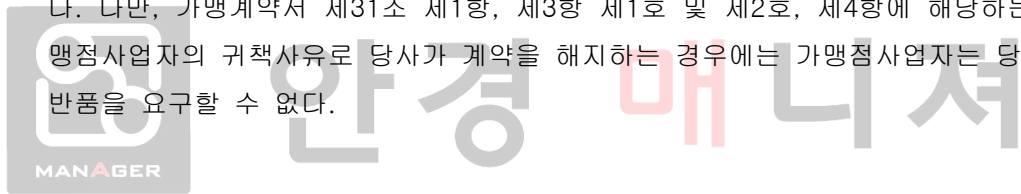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양수가맹비(신규가맹비의 1/2수준)**와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안경매니저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사로부터 부여받았던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는 당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 및 기타 표시물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이때 철거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당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변형하여 당사가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당사나 협력업체로부터 지원 받은 기기 등을 임의 철거를 하지 못하며 지원받은 품목을 반환해야 한다.
- ④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 내용이나 고객을 넘겨 주는 행위 또는 당사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가맹점사업자는 당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당사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급받은 물품에 한하여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상호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가맹계약서 제31조 제1항, 제3항 제1호 및 제2호, 제4항에 해당하는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당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반품을 요구할 수 없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안경매니저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개점 이후에도 추가품목 구입 시 강제/권장 기준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당사의 『안경매니저』 가맹사업은 그 내용이 소매업종으로 정보공개 바로 직전 사업연도 기준의 주요품목별 공급가격의 상·하한가에 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순번	품목(단위)	공급가격		구분
		상한	하한	
1	“별첨 2. 주요품목” 소매업으로 해당 없음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안경매니저』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거래 주선의 대가 내역

1)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로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당사는 정보공개일 직전 사업연도 기준 『안경매니저』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고 그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나 주선의 대가를 수취한 사실이 없습니다.

2) 특수관계인이 강제하는 특정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당사는 『안경매니저』가맹사업에 있어 특수관계인에 의해 거래를 강제하는 특정거래상대방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에 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및 용역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표 또는 용역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안경매니저의 타 가맹점	당사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물품	거래상대방별로 왼쪽에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 회 위반: 구두경고	당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			2 회 위반: 서면 시정 요구 후 가맹점운영권 제한	
			3 회 위반: 계약해지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으며 상품별 권장가격에 대한 사항은 “안경매니저” 홈페이지(www.opticalmanager.co.kr) 또는 온라인카페 등, 별도 공지를 통해 알려드리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가 권장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4. 영업지역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으며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안경 전문 가맹사업	1. 안경매니저, 2. 아이피아, 3. 씨채널 4. 글라스스토리 (GLASS STORY) 5. 렌즈스토리 (LENS STORY)	해당 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상권에 따라 상이하나 영업거점 주소지로부터 동선거리 200m의 범위를 원칙으로 함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영업지역 내 대형할인매장, 백화점, 종합병원 등의 대형건물은 특수상권으로서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본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M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조정 통보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통지 →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②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③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안경매니저』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안경매니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및 상호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일반도매점	주식회사 늘푸른옵티칼	아큐브(팩 렌즈)	도매업으로 세부업종이 다름
	일산제일광학	아큐브(팩 렌즈)	
	부천육일광학	아큐브(팩 렌즈)	
	강릉케이광학	아큐브(팩 렌즈)	
	한양광학(청주한양)	아큐브(팩 렌즈)	
	(주)청아옵티칼	아큐브(팩 렌즈)	
	대구니텍	아큐브(팩 렌즈)	
	제주제일광학	아큐브(팩 렌즈)	
	부산지오렌즈	아큐브(팩 렌즈)	
	(주)광주케이렌즈	아큐브(팩 렌즈)	
	(주)한샘앤컴퍼니(수원한샘광학)	아큐브(팩 렌즈)	
	신성옵틱	아큐브(팩 렌즈)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온라인몰과 가맹점사업자 포함 안경점주를 위한 도매용 온라인몰을 운영하고 있으나,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소매용으로 공급하지는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안경매니저의 가맹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 년입니다. 갱신 시에도 2 년씩 연장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 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 년간 주어집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계약만료 일: D-day)
-----	-----------------------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 +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3) 계약 갱신 거절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7조 2항 각호1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가)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하며 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3 조 3 항	25 조 각호 및 31 조 1 항 2 호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조 3 항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4 조 4 항	
가맹점사업자가 로열티 및 공급품 대금의 납입을 12 개월에 걸쳐 2 회이상 연체하는 경우	15 조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승인없이 개점후 교육에 12 개월에 걸쳐 2 회 이상 불참(미이수)한 경우.	16 조 5 항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7 조 1 항 및 2 항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 3 자의 명의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8 조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20 조 1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승인받지 않고서 강제 품목을 자점매입한 경우 (3 회이상 적발시 해지절차 적용)	23 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 설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7 조 7 항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판촉의 광고·판촉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29 조,30 조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5 조 1 항
가맹점사업자가 고객클레임이 연간 3 회이상 발생하는 경우	42 조 1 항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25 조 14 호
공동의 중요한 영업정책(공동광고, 공동판촉, 외부기관 업무제휴 등)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25 조 15 호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3 개월 이상 개점이 지연되거나 최초 개설 비용의 지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	31 조 1 항 2 호

나)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31조 4항 각호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다)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1 조 3 항 각호 1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라)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당사에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통지하여 시정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가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31조 2항
당사가 사용을 허가한 영업표지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마)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2개월 전에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 후 협의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의 서면합의를 거쳐 계약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절차
--------	------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042-523-7741

- 양수인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당사에게 **양수가맹비와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 체결**을 원할 경우에는 **가맹비와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	이전 범위	절차	비고
----	-------	-------	----	----



	(조건)			
상속	상속인 사후 통지시 가능	모든 권리 의무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이 서면으로 승인 요청 → 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직계 존비속에 한함
대리행사	불가능	-	-	-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 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위탁 승인 요청 → 당사 담당팀 검토(위탁자 면담 포함, 1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동일한 영업지역 내에서 귀하가 안경매니저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안경매니저와 동일한 컨셉 및 노하우를 사용하는 안경, 렌즈 등의 판매 및 서비스업	해당사항 없음	문의: 042-523-7741

- 귀하는 가맹계약 종료 후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 3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안경매니저』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안경매니저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가맹점사업자 자율	매월 28일 이상 영업	문의: 042-523-7741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 조 제 10 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 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특성 및 개인적 상황에 따라 영업시간, 영업일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의 제한에 있어서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그 운영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2 명 이상 [99㎡ 기준]	직접 근무 권장	제한 없음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부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본사 영업팀
제품의 표준화	담당자 매장 방문 → 매뉴얼 준수 및 사입 체크 →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 완료	수시	본사 영업팀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안경매니저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 및 지역단위의 광고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시행 여부	비고
전체 광고 행사	가맹점 모집	전액부담	없음	본사판단	
	상품광고	사안별로 차등결정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측간 10:90 분담원칙) (가맹점사업자측은 광고분담금액의 1/N)		가맹점 사업자의 50% 이상 참여시 시행	본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한 동의 절차 진행. 단, 정기적인 판촉행사는 사전 동의서 작성 가능
	전체 가맹점 홍보	없음	가맹점 사업자 전액 부담(가맹점 사업자 간에는 광고 분담금의 1/N)		
판촉행사		없음	가맹점 사업자 전액 부담(가맹점 사업자 간에는 광고 분담금의 1/N)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 참여시 시행	
개별행사 및 지역광고		없음	가맹점 사업자 전액 부담	사업자 개인 판단	-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사업연도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며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팸플렛, 카다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및 손해배상에 관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기간내 및 계약 해지, 종료 이후 3년까지의 비밀유지의무와 계약기간내의 경쟁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당사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당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1일 당 30만원의 지체배상금을 당사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③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귀책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의 각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을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법령에서 정한 부당한 영업위약금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출금1 = 계약해지일 직전 1년간 당사의 월평균 물품공급액 x 0.25 x 잔여개월 수(월 단위). 단 산정시 계약이행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이행기간의 월평균 물품공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산출금2 = 월정 정기지급금 x 잔여계약기간 (월단위)]

- ④ 가맹점사업자 또는 당사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⑤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자기 또는 자기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명성 또는 신용을 훼손하는 등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상대방은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⑥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 어느 일방이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 (둘 중 빠른 시점)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가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의 금액을 상계처리한 후 반환된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금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 시간 이내	150 만원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 간 이후 10 일 이내	300 만원
계약 체결 후 10 일 이후 가맹점 오픈 이전	500 만원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오픈 절차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 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	45 일 내외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042-523-7741) - 홈페이지 및 직접방문	D-45	



1 차 상담	- 전화 상담 및 본사방문 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 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D-44~43	1. 영업개시이전 부담 금전 지급 방법 참조
점포 개발	- 점포입지 선정 - 점포개발 착수 - 상권분석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최종 개설 협의	D-30~29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예치	- 가맹계약체결 - 예상매출산정서제공(해당시) - 가맹계약서 1 부 교부 보관 - 우체국 or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	D-28	
점포실측/설계	-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D-24	
도면 작성	- 인테리어 / 별도 / 추가공사 도면협의	D-23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실시	D-22~3	
교육	- 점포운영교육	D-4~7 (3 일)	
상품 등 입고	- 상품, 전단지 등 인쇄물 입고	D-1~4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 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 (연락처: 02-3445-9898,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다만, 상호합의 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VII.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2 및 시행령 제 13 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세부내역
점포환경 개선 사유	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단, 노후화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 시점은 최근 개선일로부터 최소 5년 으로 한다.) ②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 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비용 항목	① 간판교체 비용 ②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 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 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비용 비율	①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 환경개선: 20% ②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 환경개선: 40%
지급절차	①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②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 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 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비고	집기·장비 교체비용은 가맹본부에서 비용분담을 하지 않음

-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축소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이익공유 지원정책	온라인마케팅 및 전단지, POP 등 개별 광고, 판촉지원	가맹점 이익공유 지원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간 PB상품 주문이 월평균 200만원 이상 달성시	지원 확정 후 3개월	가맹점 1곳 당 총 200만원 이내	가맹점 이익공유 지원 신청자에 한함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대상 및 내용	절차	비용 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경영상 발생문제 등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가맹점사업자 요청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경영상 발생문제 등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한 자금지원이나 매출부진에 따른 경영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1) 개점 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안경매니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서비스교육 및 운영교육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소양, 서비스 마인드교육 및 고객관리, 검안, 누진, RGP 등	실습 및 강의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2) 개점 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효율적인 안경매니저 가맹점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이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교육시간	비고
수시교육	사업운영에 필요한 의견수렴 통지사항, 신제품소개 등	실습 및 강의교육	1 일(3~4h)	영업방침 및 신제품 교육
특별교육	점주의 요청에 의한 특별교육 및 훈련요원의 파견	실습 및 강의교육	1 일(3~4h)	가맹점주 요청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안경매니저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개점 전 교육	3 일 (20 ~ 24h)	220 만원(VAT 포함)	최초 계약시 이수 (1 일 8 시간 기준)
수시 교육	1 일 (3~4h)	기본이론교육무료 실비 발생시 청구	신제품 출시 및 필요시
특별 교육	1 일 (3~4h)	개별교육에 따라 가 맹점사업자와 협의 산정	점주요청에 의한 교육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계약을 맺는 가맹점사업자입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 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 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당 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당 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경 매니저



별첨 1. 재무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 2. 상품 및 원부재료 필수강제/권장 품목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 3. 인근 가맹점 사업자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안경 매니저



<수령확인서 - 가맹희망자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안경 매니저



<수령확인서 - 가맹본부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안경 매니저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경 매니저